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담배 정의 확대 및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확인장치 부착 의무 부과 등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8921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담배의 정의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변경 등	3
2.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확인장치 부착 의무 부과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자담배 등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포함되지 않게 됨. 그 결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을 통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

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및 제64조).

Ⅲ. 검토의견

1. 담배의 정의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변경 등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중 담배의 정의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변경하고, 담배 판매업소 유해표시 의무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에서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가목2) 및 제28조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4. ----- ----- ----- ----- ----- -----.
가. 청소년유해약물	가.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2)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배포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사업법」²⁾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켈런·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나,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지 않음.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³⁾은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등을 이용한 담배도 포함되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담배는 포함되지 않음.

< 「담배사업법」 및 「지방세법」의 담배의 정의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담배의 종류 및 비교 >

구분	연초(담배풀)		합성니코틴
	앞	앞 외(줄기, 뿌리 등)	
「담배사업법」 상 담배,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	X	X
「지방세법」 상 담배	○	○	X
비고	겉련, 엽겉련(시가), 씹는 담배, 물담배, 전자담배 등		주로 전자담배(액상형 등)

한편, 현행법⁴⁾은 청소년유해물건도 청소년에 대하여 판매·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⁵⁾ 및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⁶⁾는 현행법 제2조제4호나목³⁾ 및 현행법 시행령 제4조제3항⁷⁾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및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를 판매·배포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청소년유해물건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5)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참고자료)

6)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참고자료)

7)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그런데, 연초의 잎이나 잎 외의 부분(줄기·뿌리 등) 또는 합성니코틴⁸⁾을 이용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⁹⁾¹⁰⁾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020년 1.9%에서 2024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

(단위: %)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¹⁾	전체	2.2	2.7	3.2	1.9	2.9	3.3	3.1	3.2
	남자	3.3	4.1	4.7	2.7	3.7	4.5	3.8	4.7
	여자	0.9	1.1	1.5	1.1	1.9	2.2	2.4	1.5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²⁾	전체	-	-	2.6	1.1	1.4	2.3	2.1	2.6
	남자	-	-	4.0	1.6	1.8	3.2	2.7	4.0
	여자	-	-	1.2	0.5	0.8	1.3	1.4	1.2

1.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2.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 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의 '2024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

8)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의미함(박은희, 「합성니코틴」, 「담배규제팩트시트」, 2022).

9)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상 니코틴 유해성 평가'(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2012년, p.53)에 따르면 니코틴의 성인 치사량이 40 - 60mg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함량의 전자담배를 2mL정도만 흡입하여도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10) '합성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국제특성분석연구소, 2024년, p.6)에 따르면, 니코틴 원액의 비표적 분석 등을 통해 69개 유해물질 항목을 선정해 원액 상 해당 물질 포함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했으며, 연초 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2,509mg/ℓ의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개 항목에서 23,902mg/ℓ 이 검출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세법」의 담배의 경우에도 연초가 포함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이용하여 제조된 담배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줄기·뿌리 등 연초의 잎 외의 부분과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유사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¹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개정안의 심사경과¹²⁾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

1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현황(2025. 8. 11. 기준) >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22017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2024. 7.15.
220247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2024. 8. 1.
22025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2024. 8. 5.
220287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2024. 8.16.
22028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2024. 8.16.
22046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2024.10.10.
22050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2024.10.30.
22050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2024.10.30.
22051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2024.10.31.
22055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2024.11.13.
22113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2025. 7. 7.
22117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2025. 7 28..
22119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2025. 8. 5.

12)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제422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록(2025. 2.10(제1차), 2025. 2.18(제2차) 참조]

하나,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에도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담배 등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경우에는 담배 판매업소 유해표시 의무자는 ‘「지방세법」 제47조제7호에 따른 소매인’으로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확인장치 부착 의무 부과

개정안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는 자(「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제외)는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1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생략) ⑤ (생략) ⑥ ~ ⑩ (생략) <u><신설></u>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u>⑪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는 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전자식별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인식하고 그 신</u>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생략)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u>제7호의2</u>·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략)	<u>분증의 진위 및 본인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이하 “신분증확인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u> 제45조(시정명령) ① -----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제28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신분증확인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u>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 ----- <u>제7호의2</u> · <u>제7호의3</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13)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담배로 해석되는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아닌 유사담배만을 판매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제외)는 자동기계장치 등에 전자식별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 등을 인식하고 그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신분확인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에도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는 포함되지 않아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만을 판매하는 자동기계장치 등은 신분확인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지방세법」에 따른 유사담배를 판매하는 담배자동판매기에는 신분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도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분확인장치 부착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담배의 원료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외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 등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확대될 경우 성인인증장치 부착 대상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관련 규정 비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개정안에 따른 “신분증확인장치” (개정안 제28조제11항)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담배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전자식별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인식하고 그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무인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담배 소매업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한 담배와 기존 담배를 다른 법령에서 다른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6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1. 11. 25.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57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개정 2017. 10.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7. 12. 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5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